
2022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2022. 11.

제 출 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2022년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 11.

이매니지먼트(주) 대표이사 나상억

목 차

I. 대내외 인권경영 환경 분석	5
1. 국제 인권경영 동향	5
2. 국내 인권경영 동향	8
3. 인권경영 구축 사례	17
4. 시사점	20
II. 인권영향평가 실시	21
1. 인권영향평가 이해	21
2. 인권영향평가의 중요성	22
3. 한국기술교육대학 인권영향평가 실시	23
가. 인권영향평가 개요	
나. 주요사업 선정	
다. 평가방법	
4. 인권영향평가 실행개요	25
가. 인권영향평가 프레임워크	
나. 인권영향평가 추진 단계	
5. 평가지표 구성과 내용	27
가. 사전 정보	
나.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다.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6. 주요사업 이해관계자 인권실태조사	32
가. 조사 개요	
나. 조사 결과	
다. 시사점	
III.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34
1. 평가 종합	34
가. 총평	

나. 체크리스트 종합 진단 결과	
2. 기관운영 분야별 평가 결과	36
가. 분야1_인권경영체제의 구축	
나. 분야2_고용상 비차별	
다. 분야3_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라. 분야4_강제 노동의 금지	
마. 분야5_연소자 노동의 금지	
바. 분야6_산업안전 보장	
사. 분야7_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아. 분야8_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자. 분야9_환경권 보장	
차. 분야10_학생 인권 보호	
IV.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60
가. 평가 종합	
나. 주요사업 평가 결과	
다. 주요사업 항목별 평가 결과	
V. 중대성 평가 통한 주요 인권이슈 도출	64
가. 중대성 평가 개요	
나. 주요 인권이슈 도출	
VI. 주요이슈별 대응방안	66
가. 기관운영 개선과제	
나. 주요사업 개선과제	
VII. 인권경영 추진 로드맵	67
별첨. 인권영향평가 세부평가내역	

1. 국제 인권경영 동향

- 인권경영은 기관의 경영과 사업 활동에서 임직원, 공급사, 협력업체, 현지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요인을 조사하여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구제 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존중하여 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
- 1970년대 이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인권경영 관련 연구·합의가 이루어져 현재 국제 사회 전반에 중요성 및 영향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국제사회 인권경영 추진현황]

- 유엔인권위원회(UNHRC) 기업과 인권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지침(2014년)
- 유엔인권위원회(UNHRC)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대한 해설 지침(2012년)
- 유엔인권위원회(UNHRC)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채택(2011년)
-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출범(2000년)
- 국제노동기구(ILO) 사회정책 원칙에 대한 3자 헌장 발표(1977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제정(1976년)

-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26000, GRI, OECD Guideline, UN Global Compact 등 인권경영 표준화 확대
- 지구온난화와 기후 변화, 빈곤, 인구 증가, 환경 파괴 등에 대처하기 위해 SDG에서 더 나아가 ESG 경영이 전세계적 트렌드로 부상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 국제연합의 “보호·존중·구제” 프레임워크 실행을 위한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 국제인권규범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다루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Initiative)가 표방하는 기준과 절차가 갖는 의미를 분석·정리·체계화한 결과물
- 기업들의 자발적 이행을 전제로 기업에 인권존중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업들 스스로 실천, 점검해야 할 의무(Due Diligence)를 강조

[국제기구의 윤리·인권 가이드라인 요약]

구분	내용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다국적기업이 경제·환경·사회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안내 - 한국 등 34개 OECD 회원국 소속의 다국적기업 적용 권고 - 사회, 윤리 및 환경정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윤리)가치선언 제공 · 2011년 인권파트 신설 · 인권리스크 심각성 주의 강조 · 고용 및 노사관계 인권보호 강조
ISO 26000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	- 2010년 ISO 26000 제정 - 모든 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침 제공 · 조직의 윤리적 행동 강화 · 인권영향평가 및 리스크 대응 · 인권침해 구제제도 실행 · 여성 등 취약집단 차별금지, 노동기본권리 보호 강조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 2011년 이행지침 최종 승인 - 기업과 인권에 대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글로벌 행동기준 제시 - 인권 보호, 존중, 구제 3대 축으로 구성 - 인권선언, 리스크 평가, 정보공개 권고 - 각 항목별로 31개의 기본지침과 운영지침 제공
UN 글로벌 컴팩트	- 2000년 출범, 인권·노동·환경·반부패 기준 제시 - UN과 기관(기업)을 직접적 연결하는 플랫폼 -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며 강제성 없음 - 기업회원 9,500개社 가입 중, 기업이 작성한 정보공시보고제도 참여를 통해 사회적 책임 증진 도모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방지 분야의 10대 원칙을 제시 · 원칙 1.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 · 원칙 2. 사람이 인권 유린에 연루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원칙 3.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한다. ·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반드시 철폐한다. · 원칙 5. 아동 노동에 대한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폐지를 수행한다. · 원칙 6. 고용 및 직업에서의 어떠한 차별도 철폐한다. · 원칙 7. 환경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원한다. · 원칙 8. 환경 책임을 증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수행한다. · 원칙 9.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장려한다. · 원칙 10. 기업은 강요와 뇌물 수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해야 한다.

구분	내용
ILO 다국적기업 선언	- 1977년 제정, 2017년 3월 개정 - 개발도상국에서의 다국적기업의 활동 중 노동, 사회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력 필요 - 고용, 훈련, 노동조건, 생활조건, 노사관계 강조 · 노동기준 준수, 고용 기회 대우의 균등 · 노동조건과 노동안전위생 확보 · 건전한 노사관계 촉진 강조 · 노동권에 대한 영향평가 조치 신설
GRI 지속가능 경영보고 가이드라인	- 조직의 경제·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 보고 -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보고 기준으로 활용 - 윤리적, 합법적 행위에 대한 조직 내외부 자문 매커니즘 · 인권영향평가 검토 대상 사업장 ·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교육 · 인권 심사 시행을 포함한 계약 체결 · 동등한 기회 제공, 차별금지 · 아동 노동, 강제 노동 금지 정보 보고

2. 국내 인권경영 동향

□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활동

-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과 같은 국제적 규범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를 발간
- 본 체크리스트는 기업들이 인권경영을 도입·실천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원칙 및 운영원칙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의 문제점들을 기업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 점검항목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경영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강조해왔음

□ 2018년, 정부의 인권경영 정책 수립·발표

-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2018~2022, 법무부)’ 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보호 의무로 강조하고 인권경영 제도화 및 피해구제에 대한 과제를 공공기관에 촉구
 - ※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 전 세계 39개국이 수립·시행 중임
- 2018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2018.8, 국가인권위원회)’ 을 발표하면서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행 지원,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지표 신설·확대를 권고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30개 정부 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인권경영 실행 권고에 대해서는 일부를 제외한 860개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로 인권경영 선언,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영향평가 등을 추진 중

□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 행정안전부가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2018. 12.)을 통해 2020년부터 인권경영에 대한 별도의 지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으며, 기획재정부도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기관의 인권경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비중을 높이고, 평가내용을 구체화함
 - ※ (‘17)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 내 인권경영 일부 반영→(‘18) 별도 윤리경영 지표

신설(3점) 및 인권경영 내용 구체화(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 노력)

[정부 부처별 인권경영 정책]

정부 부처	주요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 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 ('14년) -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권고('16년) - 기업과 인권 NAP 수립 권고('16년) -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18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내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인권증진 활동 평가 실시 - 공기업,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내 사회적 가치 지표 신설 및 배점 확대
법무부	-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사회 ·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 인권 친화적 기업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관계부처 합동	- 30개 정부부처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사항 수용('18년) - 갑질, 채용 비리 등 인권피해에 대한 내부감찰 관리 감독 강화 - 공무원 행동강령 내 갑질 금지 규정 신설 -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보급 -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피해 회복 지원

□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 적용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을 적용하여 인권경영 추진이 필요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경영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 내용
일반원칙	- 기업은 자신의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존중해야 함 - 기업이 보호·존중해야 하는 인권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된 것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 및 각종 인권규범에서 열거된 것을 모두 포함
운영원칙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권리,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공급망 관리, 현지주민의 인권, 환경권, 소비자인권 등 10개의 각 이슈별 ‘원칙’을 제시 - 원칙은 기업이 준수해야 할 이슈별 규범을 압축적으로 나타낸 것
이용방법	- 각 이슈별로 큰 원칙을 읽어서 이해한 후 질문을 읽기 - 질문에 대한 답은 5가지이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해당 답변에 표시 - “아니오”로 나오는 항목을 발견하고 그렇게 발견된 항목에 대해 사전조치하기 위한 것(취약지점을 발견하는 도구) - 신뢰성을 위해 노조나 여타 이해관계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함께 점검

□ 2020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모범거래모델 가이드라인

- 2020년 6월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이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 불공정거래를 줄이고,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으며,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민간까지 확산할 계획을 발표함
- 모범거래모델은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소비자·협력사와 더욱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임
- 많은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중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분야가 취약한 상황이며, 주요 사업 인권 영향 평가지표에 모범 거래모델의 주요 지표를 반영하여 공정경제 기반 조성을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불공정거래를 유발하는 제도적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음

□ 직장 내 인권 보호 및 구제강화 법률 시행

- 2019년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시행 및 관련 법규 개정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 '19년 7월 시행 등 법률로써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 등 직장 내 인권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근로자에 대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되는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있음

□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 동향

- 최근 공공기관 인권경영은 어떻게 기존의 인권경영을 고도화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따라서 (1)인권경영위원회 역할 강화 (2)구제절차 실효성 제고 (3)인권침해 피해자 보호 강화 (4)책임있는 공급망관리 및 협력사 인권경영 지원 등이 경영평가 주요 지적사항으로 논의되고 있음.
- 인권영향평가계획 및 지표의 검토과정부터 인권경영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인권경영위원회의 개최를 상·하반기로 강화하여 인권경영기본계획수립, 이행점검, 과제추진결과 환류 등 전반에 대해 전문적 자문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권경영 전담부서가 인권리스크 관련 부서별로 개선과제의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부서별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이행결과의 확인 및 이행결과 경영진 보고 등을 통해 인권리스크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관리활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구제절차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진정의 접수와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진정인)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관 홈페이지에 인권경영을 하나의 메뉴로 개설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인권경영 메뉴에 인권침해 유형을 간단히 소개하여 피해자가 본인의 사례에 대해 인권침해 신고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있음. 또한 계약공고문에 인권경영 담당자 연락처를 간단히 표시하고, 입찰 및 계약 관련 서류에 인권침해 유형을 안내하여 신고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의 인권경영활동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고객, 협력사, 지역주민, 관할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집단별 맞춤형 홍보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협력사 등 공급망의 인권경영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및 모니터링 방안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ESG 동향

-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3가지 핵심요소를 의미
- 최근 ESG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으며 소비자, 투자자, 정부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관심사가 되면서 기업에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핵심적 요소로 부상
- 1987년 UNEP(유엔환경계획), WCED(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제시 됨
- EU는 2018년 ESG 정보공개 의무화 법령을 발표했고, 미국은 1978년부터 정부윤리법 제정 등으로 기업윤리 및 지배구조 중심의 제정 및 정보공시를 강화해왔으며, 일본도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 중
-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단계별 ESG 정보공시 의무화를 추진(상장기업)하고 있으며 ESG 관련 규제 법안 등을 추진 중

□ 기획재정부, 윤리경영 표준모델

- 윤리경영이란 좁게는 기관운영에 대한 반부패활동에서 넓게는 사회적 책임 경영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
 - 이는 공익을 주요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이 반드시 따라야 할 기준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2003년부터 세부지표로 윤리경영에 관련된 지표를 포함시켜 평가해 왔음
- 단,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경영성 향상과 사회적 책임 이행은 서로 상충할 수 있으므로, 상충을 방지하고 두 방향의 가치를 균형있게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LH사태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윤리경영 표준모델이 제시되어 윤리경영 중요성 강조
 - 청탁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 제정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 윤리경영 표준모델은 6가지 핵심요소(윤리의식 확립, 관리체계 구축, 윤리위험 파악, 윤리위험 통제활동, 내·외부 의사소통, 윤리경영 모니터링)와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추진원칙 제시

□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은 공공기관이 국제 반부패 규범에 부합하는 CP 체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부패 리스크를 예방·탐지·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구성하였음
- OECD, TI, UNGC 등 국제기구와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부패 방지 관련 가이드라인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조직의 부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리스크 예방·탐지·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청렴윤리경영 CP의 전체 체계는 5개 대분류, 12개 중분류, 25개 지표, 45개 세부지표로 구성되며, 세부지표 이행에 필요한 실행적 요소는 190개 준수사항으로 구체화하였음

[청렴윤리경영 CP 구성체계]



□ 2022년, 인권위 공공기관 ‘인권경영 보고지침’ 적용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7월 30개 정부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경영평가 대상인 산하 공공기관이 인권위가 마련한 ‘인권경영 보고지침’에 따라 인권경영의 결과를 보고 및 공시하도록 하고 향후 기관 경영평가 시 위치침에 따라 독립적인 항목으로 인권경영을 평가할 것을 권고하였음

[인권경영 보고지침]

분야	세부 내용	비 고
인권경영 체계 및 인권경영 정책	- 인권경영 추진체계	- 인권경영 규정, 제도, 조직 등
	- 인권정책 선언 및 확산	- 인권정책 선언 및 확산 노력
인권영향평가	- 주요 인권이슈 도출	- 인권영향평가 통한 주요 인권이슈 도출 과정
	- 대응계획 수립 및 실행	-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대응계획 마련 및 실행 결과
구제절차	- 구제절차 제공	- 현행 구제절차 운영 현황
	- 구제절차 운영 실적	- 구제절차 운영실적 제시
인권경영 공개 및 인권경영 교육	- 인권경영 공개 및 소통	- 인권경영 정보 공개방안 및 공개 현황, 대내외 소통 현황
	- 인권경영 교육	- 인권경영 교육체계, 교육실적 등

- 향후 공공기관은 인권위의 ‘인권경영 보고지침’에 의거하여 인권경영 이행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경영평가 실적자료로 제시해야 함

□ 정책 동향 분석 및 시사점

- 국내외 정책과 제도는 공공기관에 인권경영 체계 구축, 인권경영 추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관은 환경변화에 따라 인권경영 체계 점검 등을 통한 인권경영 고도화가 필요함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글로벌 정책 및 표준	- 기관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강조 - 인권영향평가 및 리스크 대응 강조 - 인권침해 구제제도 실행 권고 - 정보공개 권고 등	- 국내 인권경영 활동이 취약한 협력회사, 자회사 등 공급망 관리, 환경권, 지역주민 보호 등 확산방안 모색 필요 - 구제제도 체계 점검 및 개선, 홍보 - 정보보호 대상과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기준 필요
정부 정책 및 제도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 -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른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행 권고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인권경영 노력과 활동 평가 실시 - 공공기관의 갑질, 성희롱, 괴롭힘, 채용 비리 등 인권피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권고 - 공공기관 정보공개 의무 강화 - 기획재정부 윤리경영 표준모델 적용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보고지침 적용 권고	-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활동 계획 수립 및 홍보 필요 - 내부 규정 및 지침 내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영향평가, 구제절차 관련 체계, 세부 계획 및 내용 정립 필요 - 공공기관 인권침해사례 및 이슈등을 고려하여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개발/실시 필요 - 인권경영 성과 확산을 위한 성과 공개, 홍보 필요 - 공공기관 경영평가 인권경영 분야 평가 대비 필요 - 인권경영 정보공개 기준 마련 - 윤리경영과 인권경영의 통합적 추진 필요 - 인권경영 보고지침에 의거한 인권경영 보고서 작성 필요
법률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근로기준법)으로 근로자 인권 보호 체계 강화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구제 조치 강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직장 내 갑질, 괴롭힘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재발방지 교육 필요 - 구제절차 수립 및 체계,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대응 매뉴얼 등 마련 필요

3. 인권경영 구축 사례

가. 인권경영 실시 동향

□ 해외/민간기업 동향

- EU는 2018년부터 500인 이상의 기업의 경우 인권을 포함한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개를 법제화했으며, 프랑스는 2017년 5000명 이상의 기업에 대한 ‘인권실사’를 법제화했고, 스위스, 독일 등의 유럽 선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 한국은 아직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개나 ‘인권실사’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나, 삼성은 2018년 노동인권 감독관을 선임하여 베트남 사업장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LG화학은 미국 IBM 및 포드, 중국 화유코발트 등의 기업과 손잡고 코발트 공급망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동권 침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공공기관 동향

-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은 기업활동으로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실현하는 가교로서 공공기관의 공급망에 포함된 민간기업으로 인권존중 책임 확산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시범 적용을 지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 등 비재무공시와 연계하여 대외 정보를 공개하는 단계에 이름

인권경영 매뉴얼 시범적용	▶	인권경영 추진체계 구축	▶	사회적 가치실현 연계
국가인권위원회 지정 시범적용 기관으로서 인권경영 체계 구축 전 과정 수행 중		내·외부자문을 통한 체계 구축 진행		기관 ‘사회적가치체계’에 인권경영 반영, CSR 보고서 형태로 대외 공개
▷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공사, 부산항만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 한국교육개발원, KIET, KIC, KISD, aT, EX, IIAC, KOTRA, 국가철도공단 등		▷ IIAC, aT, LH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전KDN,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나. 공공기관 인권경영 시스템

□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인권경영 선언문을 제정하여 인권경영 추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 전담부서 설치가 바람직하지만 기관 사정에 따라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인권경영 전담자로 임명할 수 있음

□ 인권경영 실행지침(규정) 제정

- 인권경영 실행목적, 체계, 위원회 구성과 운영, 영향평가, 실태조사, 이행사항, 구제조치를 포함하는 인권경영 이행지침을 제정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기관 인권경영 정책실행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기구 역할로 최고경영진 포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구성

□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선언문을 작성하고 인권경영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인권경영 선언문을 확정하고 공표함

□ 인권경영 선언문 작성

- 기관 인권경영 현황을 바탕으로 인권경영 선언문 초안 작성
- 인권경영위원회 검토 요청
- 외부전문가, 자문기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 기관 공통 포함내용
 - 지지하는 인권 기준, 비차별 또는 차별금지 원칙
 -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강제 및 아동 노동금지 등 노동권
 - 반부패, 투명경영, 실천 및 점검의무
 - 직원, 소비자, 공급망,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인권존중
 - 피해자 구제
- 업종에 따라 특정 인권 이슈 강조

□ 인권경영 지침 및 현장

○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함

제1장 총칙	제2장 인권경영일반원칙	제3장 인권경영체계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5장 인권영향평가
• 목적 • 정의 • 적용범위	• 고용상의 차별금지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안전 및 보건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지역주민 인권보호 • 환경권 보장 • 고객 인권보호 • 구제조치의 노력 •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 인권경영현장 • 전담조직 • 인권교육	• 설치 및 기능 • 구성 • 소집 및 회의 • 수당 • 의견청취 • 비밀누설금지 • 위원 위촉 해제 • 이익충돌회피	•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6장 인권의 구제
				• 인권경영책임관 지정 • 인권침해구제절차 • 결정서작성 및 송부 • 신고인의 신분보장

□ 구제절차

○ 기관에 가장 적절한 구제절차를 파악하기 위해 기관 내 기존 고충 처리 제도와 활용 가능성이 큰 사법적/비사법적 구제제도를 마련함

□ 구제절차 연구와 준비

- 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해 파악한 인권 리스크와 인권침해 이슈를 구제절차 형식에 반영

□ 구제절차 수립 및 시행

- 내부 구제절차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또는 ‘인권옴부즈맨’ 활용을 권장하며, 인권경영위원회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이를 구제기구로 활용하거나 산하에 인권침해 구제위원회를 둘 수 있음
- 구제기구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지원을 받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
- 전담자 임명이 바람직하나, 유사 업무 담당자를 인권옴부즈맨으로 임명 가능
- 구제절차 운영에 관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수립 (내부지침, 외부구제 절차)
- 구제절차 이용안내, 진정인의 개인정보보호조치, 장애인 접근성 향상, 구제절차 교육방안 마련
- 구제 매뉴얼,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정접수, 구제시행

4. 시사점

- 인권경영은 기관의 경영과 사업 활동에서 임직원, 협력사, 고객, 현지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요인을 조사하여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구제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존중하여 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함. 1970년대 이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인권경영 관련 연구·합의가 이루어져 현재 국제사회 전반에 중요성 및 영향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 인권경영은 ISO 26000(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을 비롯, GRI,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및 글로벌 콤팩트 등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향후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음
- 인권경영의 중요성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권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포함 외에도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법 시행과 맞물리면서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 공공기관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인권경영 4단계에 따라 인권경영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인권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II

인권영향평가 실시

1. 인권영향평가 이해

가. 개념 이해

구분	개념
인권경영	• Business & Human Rights • 국제사회에서 선언한 국제인권규범을 지지하고 국내 법률을 준수해, 인권침해 회피 노력을 다하고 부정적 인권영향 발생 시 이를 다루는 회사의 경영 활동
인권경영시스템	• System for Implementing the Business & Human Rights • 인권경영 이행 체계로 정책선언, 이행 시스템 구축과 실행, 실행성과를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것을 포함
인권실사 및 실천 · 점검 의무	• Due Diligence • 회사의 인권침해 회피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정적 인권영향 파악, 예방 및 완화 조치 시행, 실행 성과 추적 및 공개 과정을 의미함 • 인권경영시스템 구축과 실행 성과를 회사의 인권실사 및 실천 · 점검 의무 이행 증거로 판단
인권영향평가	•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 인권실사 및 실천 · 점검 의무 이행의 핵심 도구로 부정적 인권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 • 부정적 인권영향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적절한 원칙과 절차 수행이 요구됨

나. 특징 및 주요 요소

구분	개념
특징	• 환경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등과 구별 • 회사 인권 리스크는 물론 권리보유자(HR holders)의 리스크를 동시에 다룸 •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인권규범을 평가 기준으로 설정 • 보편적이면서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
주요 요소	• 평가절차와 결과의 정당성, 신뢰성 확보(이해관계자 참여) • 평등과 비차별 원칙 • 접근성과 투명성 • 책무성(피해자 구제절차와 연계) • 포괄성(모든 인권을 고려) • 정책 피드백의 효율성(회사의 참여) • 객관성, 전문성, 독립성(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참여)

2. 인권영향평가의 중요성

가. 기관 인권리스크 사전관리 & 실제적·잠재적·부정적인 인권영향 파악

- 회사 운영 및 주요사업 관련 인권취약 분야 파악
- 인권침해 예방 및 완화계획 수립의 기초 정보 제공
- 인권취약 지역 또는 이해관계자 인권증진 프로젝트 개발 기회 제공

나. 부정적 인권영향 발생 예방

- 인권존중 책임에 대한 조직 구성원 인식 제고
- 이해관계자 인격권 및 노동권 침해 예방
- 여성, 비정규직 등에 대한 차별 요소를 파악하여 사전 대책 마련
- 기타 회사 운영과 사업 관행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다. 리스크 및 압력 대응

- 회사 명성, 재정 리스크, 법적 리스크, 지속가능성
- 정부, 시민사회, 노동조합, 언론매체, 지역사회 등

3. 한국기술교육대학 인권영향평가 실시

가. 인권영향평가 개요

○ 평가대상기간 : 2021. 9. ~ 2022. 8.

○ 평가주체 : (내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TF, (외부) 이매니지먼트(주)

대학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 기관과 공동으로 진단 및 평가 실시

○ 평가범위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기관운영) 인권경영 체제, 고용 및 노동권, 산업안전, 공급망 관리, 현지주민 인권, 환경권, 학생 인권 등의 분야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평가지표를 토대로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를 설계하고 기관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

(주요사업) 대학의 부설기관인 ‘온라인평생교육원’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인권체제, 공정운영, 정보보호, 근로자 인권 보호 등의 측면에서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

○ 평가목적

- 대학의 경영활동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임직원, 공급업체, 지역주민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주요 인권이슈를 도출
- 도출된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대학의 향후 인권경영 추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의 인권경영 발전에 기여

나. 주요사업 선정

○ 평가대상 사업 : 온라인평생교육원 사업

○ 주요사업 선정기준

- 사업수행에 다수 이해관계자가 참여(콘텐츠 제작기업, 내용전문가, 운영강사, 학습자 등)하고, 콘텐츠 개발업체 선정, 내용전문가 및 운영강사 선정, 우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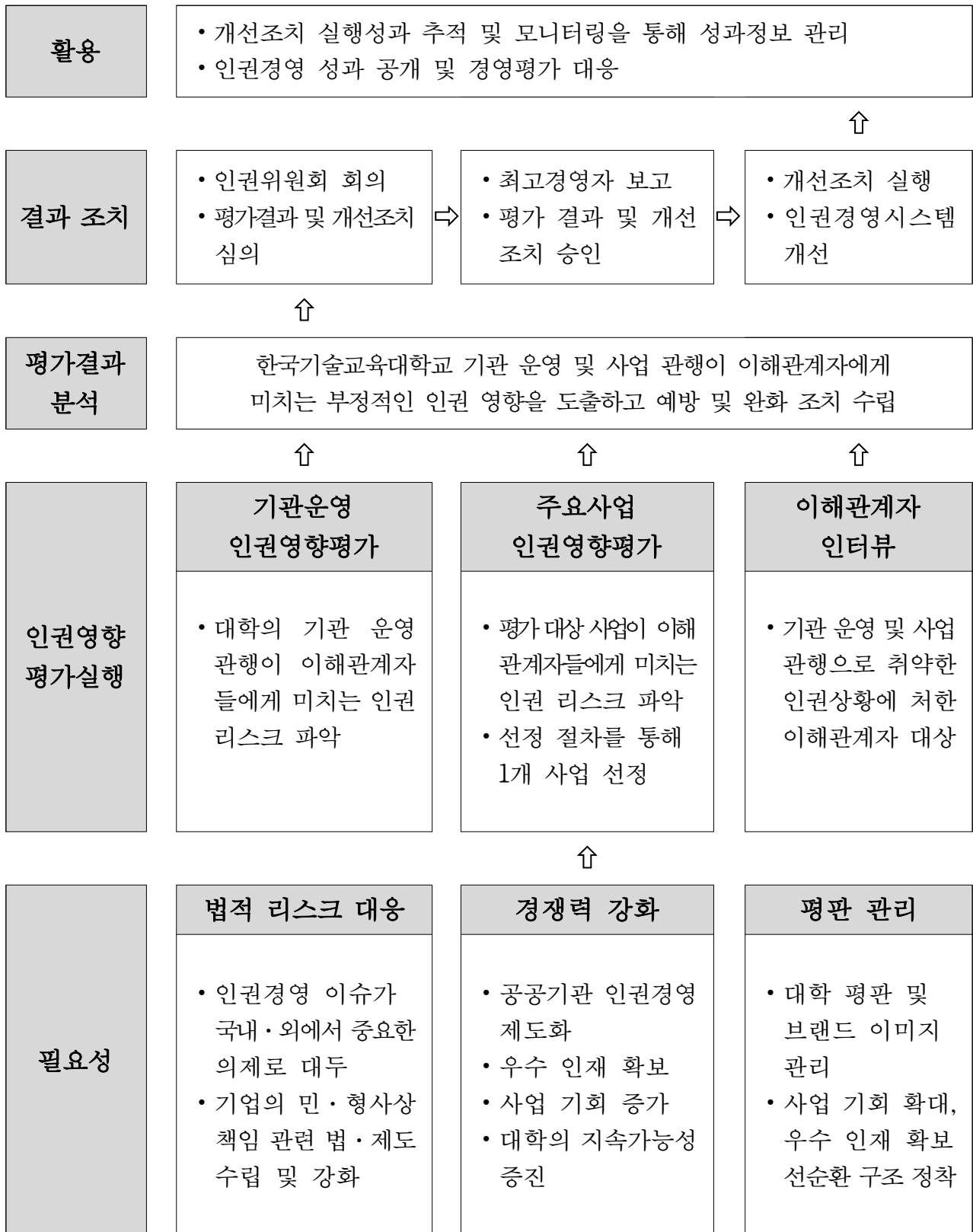
습자 및 우수강사 선정 등의 심사평가에 따른 공정운영 이슈, 참여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 등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슈들이 내재되어 있어 평가대상 사업으로 선정함

다. 평가방법

-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서 제시한 지표와 원칙, 사례 등을 참고하여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지표별 객관적 증빙자료와 평가기준을 표준화하였으며, 표준화된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제공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음
- 기관운영 평가분야별 업무담당자와 주요사업 담당자로 구성된 인권영향평가 TF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영향평가의 구체적인 실행방법 및 협조체계 운영방안 등을 공유함으로써 공동평가 여건을 조성함
- 체크리스트별로 대학 TF 평가와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충족(예)’ 지표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미충족(보완필요 및 아니오)’ 지표에 대해서는 대학 TF의 검증을 거쳐 추가 증빙자료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전문기관에서 평가에 반영함
- 대학 TF에서 최종적으로 체크리스트 평가 결과를 확인하여 평가를 마무리하고, 전문기관에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주요 인권이슈를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함
- 결과보고서 초안 내용을 인권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한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4. 인권영향평가 실행개요

가. 인권영향평가 프레임워크



나. 인권영향평가 추진 단계

1단계 준비	• 인권영향평가 수행 주체 결정(외부 전문기관+대학 Task Force) • 인권영향평가 범위 설정(기관운영+주요사업 1개) • 2022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수립 • 2022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권영향평가 착수보고
2단계 사전조사	• 인권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 • 국내외 기준에 따라 대학 인권경영체계 구축 현황 검토 및 보완·개선 방향 도출 • 평가 대상 사업 선정(온라인평생교육원 사업) • 주요사업 참여기업 대상 인권실태조사 실시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및 개선·보완(기관운영·주요사업)
3단계 착수	• TF 대상 평가지표 워크숍(인권영향평가 이해, 평가지표 이해 및 작성방법 숙지) • 1차 평가(내부 문서 및 규정, 관행을 근거로 TF가 평가 실시) • 2차 평가(용역팀이 1차 평가 결과를 검증하고 평가 결과 수정) • 용역팀 2차 평가 결과 TF에서 검토하고 피드백 제시 • 피드백 반영하여 평가 수정하고 결과보고서 작성 • 인권위원회에 평가 결과 보고하고 의견 수렴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4단계 결과적용 및 활용	• 파악된 부정적 인권 영향 예방 및 완화 조치 마련 • 파악된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 절차 시행 • 인권경영시스템 개선 및 보완
5단계 모니터링 및 성과보고	• 개선조치 실행 성과 모니터링 • 실행 성과 결과 보고 • 성과 공개 및 이해관계자 소통

5. 평가지표 구성과 내용

가. 사전 정보

1) 용어 구별

평가 분야	평가 항목	평가 지표(체크리스트)
• 대학의 인권실사 및 실천 · 점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인권경영시스템 구성요소 • 대학의 인권실사 및 실천 · 점검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존중해야) 하는 인권 목록	• 대학의 인권경영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위의 중요 실천 요소 • 대학의 필수 인권 존중을 실천하기 위한 주요 요소	• 중요 실천 요소의 실행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

2) 답변 판단 기준

구분	판단 기준
예(Yes)	• 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완 필요 (Further attention required)	• 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나, 일부 성과가 있는 경우(일부 진전 정도에 대한 진단과 향후 보완 계획 수립 필요)
아니오(No)	• 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경우(향후 추진계획 필요)
정보 없음 (No Info)	• 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의 진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정보 수집체계 구축 필요)
해당 없음 (Not applicable and Unknown)	• 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이 대학 및 사업 운영과 관련이 없는 경우 (e.g. 외국인 근로자 처우 - 외국인 근로자 없음. 노조 부재 시 대안 조치 - 노조 있음 등)

나.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1) 체크리스트 도출

검토
•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제시한 기관운영 체크리스트(10대분야 33개 항목 158개 지표)를 준용하되, 대학 특성을 반영하여 총 10개 분야 34개 항목, 169개 지표를 마련함 - 2021년 대학 특성 반영하여 추가한 ‘학생 인권 보호’ 분야 유지 - 2021년 지표 중 코로나19 관련 지표 등 9개 지표를 삭제

2) 체크리스트 개요

연번	분야	항목	지표수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존중 정책 선언	30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인권경영 성과	
		구제절차 마련	
2	고용상의 비차별	고용상 비차별	16
		고용상 남녀 비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비차별	
		외국인노동자 비차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14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4	강제노동의 금지	강제노동 금지	13
		산하기관·협력기관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연번	분야	항목	지표수
5	연소자 노동의 금지	연소자 고용 금지	14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6	산업안전 보장	작업장 안전	29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예방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 지원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9
		모니터링 실시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8	현지주민의 재산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	10
		지역주민의 지식재산권 보호	
9	환경권 보장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18
		환경정보의 공개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비상계획 수립	
10	학생 인권 보호	학생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6
		교육과정 및 서비스 결함 시 조치	
		학생 사생활 보호	
		인권침해 예방 조치	
합계	10	34	169

다.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1) 인권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프레임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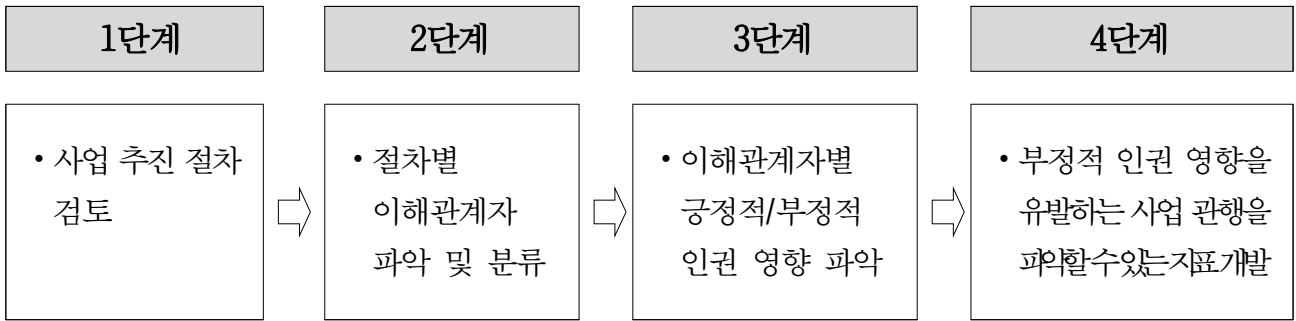
구분	세부 내용		적합도
인권 영향의 파급성	심각성	• 부정적 인권영향으로 인한 피해 정도	●
	회복 가능성	• 보상 등 구제를 통한 피해 원상회복 가능성 정도	●
	범위	• 피해 발생 시 예상되는 영향력 범위 내 위치한 이해관계자 수 또는 지역적 범위	●
대표성	목적 사업	• 대학 설립 취지 및 미션과의 직접적인 관련 정도 • 중점 추진사업	●
지역사회 연계성	지역 현안	• 지역사회의 현안 또는 이슈와 연계된 사업	●
독점성	승인/허가, 인증/자격 부여	•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바탕으로 사업의 승인이나 허가, 인증, 자격을 부여하는 사업	●

주) 적합도 상(●), 중(●), 하(○)

2) 인권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위와 같은 사업 선정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온라인평생교육원 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선정

3) 체크리스트 도출 단계



☞ 위의 체크리스트 개발 단계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4개 항목, 13개 체크리스트를 설정

4) 체크리스트 개요

연번	항목	지표수
1	사업의 인권체제	3개
2	공정운영	4개
3	참여자 정보보호 및 근로자 인권 보호	4개
4	사회적 책임 이행	2개
합계	4개 항목	13개 지표

6. 주요사업 이해관계자 인권실태조사 실시

가. 조사 개요

- 본 조사는 온라인평생교육원 사업의 이해관계자를 모집단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인권 이슈를 알아보기 위한 보조조사로 계획되었음.
- 온라인평생교육원 이해관계자의 모집단의 범위가 방대하여 모든 모집단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주요 이해관계자를 수강생, 콘텐츠 개발 협력사, 내용전문가 및 운영강사로 군집을 나누어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음.
- 각 군집에서는 1년 이상 온라인평생교육원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으로서 온라인평생교육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관계자 중 사전에 사업담당부서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콘텐츠 개발 협력사 3개사, 내용전문가 및 운영강사 7명, 수강생 5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음.
- 조사 문항은 공정운영 4개, 이용자 및 참여기업 정보보호 3개, 이해관계자 소통 3개, 자유의견 1개 등 총 11개의 문항을 구성하였음.
- 온라인평생교육원의 협조를 받아 응답대상자에게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알리고 이메일을 통하여 조사문항을 전달하였음.
- 이메일 조사 실시 결과 개발 협력사 3명, 내용전문가 및 운영강사 3명, 수강생 4명 등 총 10명이 응답하였음.

나. 조사 결과

▶ 공정운영 분야

조사 내용	평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엄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5.0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일체 수수하지 않으며 부패방지과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5.0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참여자(협력기업, 수강생, 내용전문가, 운영강사 등)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4.8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자(협력기업, 수강생, 내용전문가, 운영강사 등)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 개선하여 참여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4.90
전 체	4.93

▶ 이용자 및 참여기업 정보보호

조사 내용	평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참여자(회원 및 수강생, 내용전문가, 운영강사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조치(규정 및 제도, 절차 등)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4.8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콘텐츠 개발업체 등 참여기업의 비밀은 물론 운영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4.8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4.80
전 체	4.80

▶ 이해관계자 소통

조사 내용	평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협력기업, 수강생, 내용전문가, 운영강사 등)들로부터 이의제기나 의견 등이 있을 경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치하고 있다	5.0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자(협력기업, 수강생, 내용전문가, 운영강사 등)들이 서면, 구두, 전화,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상담이나 접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4.9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80
전 체	4.90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권경영 발전을 위한 조언

마지막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인권경영 발전을 위해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1	다년 간의 이용 학습자로서, 상기 설문 문항들에 대한 어떠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비록, 무료 서비스이기는 합니다만, 콘텐츠의 질 관리 및 2차 검토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값진 배움의 기회를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더불어 배움의 기회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메일이나 전화로 진행에 관한 협의사항을 분명하게 잘 수행하고 계십니다.
4	앞으로도 지금처럼 청렴하고 공정하게 운영부탁드립니다.
5	한기대 온평원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평생 교육원입니다
6	다양한 기술 교육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7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시사점

- 조사 대상 3개 분야가 5점 만점에 4.80점~4.93점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인권 리스크 측면에서 특이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음
- 온라인평생교육원 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 의견이 대부분이며, 지금까지와 같이 운영해 나간다면 인권경영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온라인평생교육원 사업이 무료 서비스이기는 하지만 콘텐츠의 질 관리 및 2차 검토 등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본 조사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인권 이슈를 알아보기 위한 보조조사로 모집단에 비해 작은 표본의 수로 조사를 진행하였음. 현재의 결과로서는 인권 리스크 측면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지만, 향후 실태조사 필요시에는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Ⅲ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1. 평가 종합

가. 총평

구 분	세 부 내 용
인권경영 이행 경과	• 대학은 기관운영 전반에서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UNGPs)’ 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경영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비하고 있음 • 대학은 인권경영헌장 및 학생인권선언헌장 제정,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정, 인권경영 이행규칙 제정, 인권경영 전담조직인 인권센터 설치, 인권위원회 구성·운영, 인권침해 구제절차 마련 등 인권경영 인프라를 구비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학은 인권위원회에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참여시키고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성희롱예방매뉴얼 배포, 성폭력심의위원회 및 인권심의위원회 구성, 전직원 및 학생 인권실태조사 실시, 대학원생 대상 인격권 및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 실시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인권침해 예방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음 • 대학은 2020년 이래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매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를 차기 년도 인권경영 추진계획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인권경영 성과를 대내외에 공개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인권경영 추진 4단계를 충실히 실행해 오고 있음
핵심 이슈	• 전체 169개 지표 중 18개 지표가 ‘해당 없음’ 으로 나타났고, 평가대상 지표 151개에 대한 충족 정도를 나타내는 응답 분포는 ‘예’ 145개(96.0%), ‘보완 필요’ 6개(4.0%)로 나타났음 •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 노동의 금지, 연소자 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학생 인권 보호 분야가 지표를 모두 충족한 반면,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환경권 분야에서는 일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시사점 및 제언	• 대학의 인권경영은 체제 구축, 제도와 절차 정비, 이행 프로세스 정립 등의 하드웨어 측면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나 협력기관 등 공급망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와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의 특성 및 최근 인권이슈를 반영하여 인권경영헌장을 개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내외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할 것을 제안함

나. 체크리스트 종합 진단 결과

No.	분 야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9	1			
2	고용상의 비차별	16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4				
4	강제 노동의 금지	13				
5	연소자 노동의 금지	5				9
6	산업안전 보장	28				1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3	4			2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4				6
9	환경권 보장	17	1			
10	학생 인권 보호	16				
합 계		145	6			18

2. 기관운영 분야별 평가 결과

가. 분야 1_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평가요약)

- 대학은 인권경영헌장 및 학생인권선언헌장 제정,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정, 인권경영 이행규칙 제정, 인권경영 전담조직인 인권센터 설치,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침해 구제절차 마련 등 인권경영 인프라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음
- 2020년 이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이행해오고 있으며, 인권위원회에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참여시키고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학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성희롱예방매뉴얼 배포, 성폭력심의위원회 및 인권심의위원회 구성, 전직원 및 학생 인권실태조사 실시, 대학원생 대상 인격권 및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 실시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음
- 향후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하여 인권정책 선언문에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재정립하고 인권정책 선포식을 거행함으로써 대내외에 인권정책 확산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선과제)

- 2018년에 제정된 인권경영헌장에 최근 인권이슈 및 대학 특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인권정책 선언식을 개최할 것을 제안함
- 내외 이해관계자들이 대학의 인권경영 이행 노력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인권경영 이행 성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존중정책 선언	6	1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5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5				
4	인권경영 성과	7				
5	구제절차 마련	6				
합 계		29	1			

□ 분야1. 항목별 결과

1.1) 인권존중 정책선언

평가의견	- 대학은 2018년 12월 인권경영 헌장 및 학생인권선언 헌장을 선포하고, 2021년 9월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제정하였음 - 2019년 6월 인권경영 이행규칙을 제정하고, 이후 4회 개정(2020.9 / 2021.12 / 2022.2 / 2022.9)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 대학이 인권경영 헌장을 제정한 이후 4년 여가 경과하였으므로 대학의 특성 및 최신 인권이슈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내외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여 마련하고 인권정책 선언식을 개최할 필요가 있음
개선과제	- 내외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하여 대학의 기관 특성 및 최신 인권이슈(예: ESG경영과 인권 관련성)를 반영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개정하고 대내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인권정책 선언식을 개최하여 인권정책 확산 노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1.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평가의견	- 대학은 2020년 이래 자체 TF와 외부기관이 합동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인권이슈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인권경영을 이행해 오고 있음 - 인권영향평가 과정에 교직원, 학부생 및 대학원생, 외부 이해관계자(부설기관 협력업체 및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영향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 대학은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설계 시 산업안전 보장 분야에 ‘직장내 폭력 및 괴롭힘 예방’ 항목을 추가하고, 고객인권 보호 분야를 ‘학생인권 보호’로 대체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관 특성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1.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평가의견	- 대학은 인권경영 헌장 및 인권경영 이행규칙, 학생인권선언 헌장 및 대학원생 권리장전 등 인권 관련 규범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인권경영 전담부서(인권센터) 및 인권위원회를 설치·운용하고 있음 - 인권위원회에는 노조 대표 및 학생위원, 외부 위원이 참여하며 외부위원 구성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대학은 인권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을 마련하고, 인권심의위원회/성폭력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신고 채널 구축, 찾아가는 인권상담 시행, 현장실습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 제도와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1.4) 인권경영 성과

평가의견	- 대학은 경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인권경영 성과를 경영실적 보고서에 포함시켜 인권경영 성과 관리를 해왔음 - 인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인권영향평가 결과 심의 등 인권경영 성과를 관리해 왔음 - 향후 인권센터의 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 건수, 구제절차 운용 실적 등의 정량적 인권경영 성과를 정리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필요가 있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1.5) 구제절차 마련

평가의견	- 대학은 인권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예방매뉴얼을 배포하고, 인권심의위원회/성폭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학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대학원생 대상 인격권 및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2021), 교직원 대상 인권침해 등 조직문화 실태조사(2021), 장단기 현장실습생 인권침해 실태조사(2022)를 실시하고 인권 리스크 요인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나. 분야 2_고용상의 비차별

(평가요약)

- 대학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고용상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음
- 대학은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고용상 비차별	5				
2	고용상 남녀 비차별	6				
3	비정규직 노동자 비차별	3				
4	외국인 노동자 비차별	2				
합 계		16				

□ 분야2. 항목별 결과

2.1) 고용상 비차별

평가의견	- 대학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고용상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인권경영 헌장, 인권경영 이행규칙, 인사규정, 직원채용지침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2.2) 고용상 남녀비차별

평가의견	- 대학은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상 남녀 비차별에 관한 사항을 인권경영 헌장, 인권경영 이행규칙, 인사규정, 직원채용지침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2.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평가의견	- 대학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2.4)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평가의견	- 대학은 외국인 대학원생의 종교 생활 편의를 위해 대외협력팀 건물 1층에 무슬림 기도실을 운영하고 있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다. 분야 3_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평가요약)

- 대학은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일이 없음
- 대학은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대학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일이 없으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4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5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5				
합 계		14				

□ 분야3. 항목별 결과

3.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평가의견	- 대학은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조합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대학은 임금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휴식시간 등 다양한 내용을 노동자 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3.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평가의견	- 대학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행위를 방해하는 일이 없으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3.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평가의견	- 대학은 단체협상을 위해 노동자 대표의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의 영업비밀이나 기밀유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고 있음 - 대학은 노동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권이 있는 기관 대표와 협상하도록 하고 있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라. 분야 4_강제노동의 금지

(평가요약)

- 대학은 인권경영 헌장, 인권경영 이행규칙, 인사 관련 규정 및 단체협약 등에 강제노동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대학원생 조교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대학은 협력기관으로부터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협력기관에 의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강제노동 금지	10				
2	산하기관·협력기관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3				
합 계		13				

□ 분야4. 항목별 결과

4.1) 강제노동 금지

평가의견	- 대학은 인권경영 헌장 및 인권경영 이행규칙에 강제노동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복무규정 및 단체협약에 근무시간, 연장/야간/휴일 노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일체의 강제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대학은 조교인사관리규칙에 따라 조교업무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대학원생에 대해서도 계약직 직원에 준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교육조교 복무협약서를 작성하고 대학원생 조교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여 관련 사항을 관리하고 있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4.2) 산하기관·협력기관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평가의견	- 대학은 협력기관으로부터 인권존중의무 이행 서약서를 징구하여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마. 분야 5_연소자 노동의 금지

(평가요약)

- 대학은 인권경영 현장 및 인권경영 이행규칙에 아동노동의 금지를 명시하고, 근로기준법의 연소자 고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음
- 대학은 연소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연소자 고용 금지	5				1
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8
합 계		5				9

□ 분야5. 항목별 결과

5.1) 연소자 고용 금지

평가의견	- 대학은 인권경영 현장 및 인권경영 이행규칙에 아동노동 금지를 명시하고, 근로기준법 상의 연소자 고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5.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평가의견	- 대학은 연소자 고용을 한 사례가 없으며 향후에도 연소자 고용을 할 가능성을 없 는 것으로 판단 됨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바. 분야 6_산업안전 보장

(평가요약)

- 대학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이 사무직으로 위험한 작업환경은 존재하지 않음
- 대학은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작업장 안전	5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5				
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5				
4	직장내 폭력 및 괴롭힘 예방	11				
5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2				1
합 계		28				1

□ 분야6. 항목별 결과

6.1) 작업장 안전

평가의견	- 대학은 인권경영 현장, 인권경영 이행규칙에 산업안전 및 건강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 - 대학은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경영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학은 정기적으로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발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6.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평가의견	- 대학은 단체협약,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에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명시하고 있음 -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칙에 이동지원 등 원활한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6.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평가의견	- 대학은 내부 구성원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 인식 확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화학사고 대응 모의훈련, 안전점검의 날 운영 외), 도급사업 수급업체 대상으로 사업주 안전인식 개선 및 대처역량 향상을 지원(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외)하고 있음 - 대학은 재해 및 안전보건관리규칙에 교직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 시설물 및 발주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대학시설 이용자의 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대학은 매년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2년 이내 1회 이상 실시를 필수 이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6.4) 직장내 폭력 및 괴롭힘 예방

평가의견	- 대학은 인권보호 및 침해예방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여 직장내 폭력 및 괴롭힘 예방을 도모하고 있으며,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고 매뉴얼을 제작하여 외부 민원인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대학은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직장내 폭력 및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6.5)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평가의견	- 대학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요양비를 지급하며, 여기에는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일시보상 등이 포함됨. - 대학은 직원들의 산업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의 일환으로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마련, 사무실 위험성평가 점검을 통한 위험요소의 사전 발굴 및 안전사고 예방, 휴게실 환경개선 및 건강증진시설 확충 등의 조치를 실행하였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사. 분야 7_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평가요약)

- 대학은 협력기관이 인권존중 의무를 이행하도록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서약서 내용을 토대로 필요 시 인권존중의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은 보안업무처리규칙에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개선과제)

- 계약사무처리지침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외에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것을 제안함
- 협력기관으로부터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를 징구하고 필요 시 인권존중의무 이행 여부를 전화조사, 인터뷰,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협력기관 등의 인권침해 예방	1	2			
2	모니터링 실시		2			
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2				2
합 계		3	4			2

□ 분야7. 항목별 결과

7.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평가의견	- 대학은 인권경영 현장에 명시된 협력회사 인권경영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인권경영 이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계약 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을 징구하여 공급망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개선과제	- 계약사무처리지침에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제출을 명시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을 징구하여 공급망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7.2) 모니터링 실시

평가의견	- 대학은 인권경영 현장에 명시된 협력회사 인권경영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인권경영 이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기관에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을 징구하고 필요 시 인권존중의무 이행 여부를 전화조사, 인터뷰,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개선과제	- 협력기관으로부터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을 징구하고 필요 시 인권존중의무 이행 여부를 전화조사, 인터뷰,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7.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평가의견	- 대학은 보안업무처리규칙에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아. 분야 8_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평가요약)

- 대학은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연구윤리 규정에 임직원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지식재산권 및 타인의 저작권 보호를 명시하고 있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	1				6
2	지역주민의 지식재산권 보호	3				
합 계		4				6

□ 분야8. 항목별 결과

8.1)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

평가의견	- 대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현지주민의 재산권 보호 관련 지표는 기관운영과 관련이 없어 ‘해당없음’으로 체크함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8.2) 지역주민의 지식재산권 보호

평가의견	- 대학은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에 관한 규칙에 위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금지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학은 교직원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교육을 실시함(2021)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자. 분야 9_환경권 보장

(평가요약)

- 대학은 ‘지속가능 친환경 Green 캠퍼스 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오염원 관리를 통한 Green 캠퍼스 조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대학은 고효율 설비 확충 및 배출 오염원 관리 강화라는 환경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환경문제에 대해 예방적 접근 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학은 전사적 역량 결집을 통한 국민눈높이에 부합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효과적 재난 예방과 중단 없는 업무수행 기반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개선과제)

- 대학은 환경 사업 등을 계획할 때 노동자, 학생, 공급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협의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5				
2	환경정보의 공개	2	1			
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5				
4	비상계획 수립	5				
합 계		17	1			

□ 분야9. 항목별 결과

9.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평가의견	- 대학은 ‘지속가능 친환경 Green 캠퍼스 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오염원 관리를 통한 Green 캠퍼스 조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대학은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 점검하고 있음(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및 배출하는 유해물질 감소/제거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관리)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9.2) 환경정보의 공개

평가의견	- 대학은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용수 사용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대학은 환경정책 개발 시 노동자, 학생, 공급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개선과제	대학은 환경 사업 등을 계획할 때 노동자, 학생, 공급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협의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9.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평가의견	- 대학은 ‘지속가능 친환경 Green 캠퍼스 관리체계 정립’을 통해 고효율 설비 확충 및 배출 오염원 관리 강화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환경문제에 대해 예방적 접근 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친환경 Green 캠퍼스 관리체계의 목표-추진방향-세부계획-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관리)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9.4) 비상계획 수립

평가의견	- 대학은 전사적 역량 결집을 통한 국민눈높이에 부합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효과적 재난 예방과 중단 없는 업무수행 기반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차. 분야 10_학생인권 보호

(평가요약)

- 대학은 인권경영 이행규칙에 학생인권 보호를 명시(제21조)하고, 학생인권선언을 헌장 제정하였으며, 온/오프라인으로 영문 및 중문이 포함된 모집요강 및 브로셔를 제공하는 등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대학은 인권보호 및 침해예방을 위한 규칙에 서비스 결함 등 인권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실 안전보험, 학교경영자 책임보험 등 인권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 대학은 개인정보 보호규칙 및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관리, 처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학금 신청 등 학생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동의서 및 개인정보 위탁계약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학생 사생활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대학은 교원을 대상으로 대학원생 강제노동 금지 및 인격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인격권 및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인권 소모임 및 인권집단상담을 운영하고, 인권존중 공모전 및 이벤트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인권침해 예방 노력을 기울여 왔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학생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5				
2	교육과정 및 서비스 결함시 조치	2				
3	학생 사생활 보호	6				
4	인권침해 예방조치	3				
합 계		16				

□ 분야10. 항목별 결과

10.1) 학생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평가의견	- 대학은 인권경영 이행규칙에 학생인권 보호를 명시(제21조)하고, 학생인권선언을 헌장 제정하였으며, 온/오프라인으로 영문 및 중문이 포함된 모집요강 및 브로셔를 제공하는 등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또한 홈페이지에 고객만족경영 메뉴를 설치하고 고객만족경영체계를 수립하였으며, 행정서비스 헌장을 마련하고, 고객의 소리(제안) 창구를 개설하여 운용하며, VOC개선사항을 주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10.2) 교육 과정 및 서비스 결합시 조치

평가의견	- 대학은 인권보호 및 침해예방을 위한 규칙에 서비스 결합 등 인권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대학은 연구실 안전보험 가입, 학교경영자 책임보험 가입, 국토대장정 등 학생 프로그램 운영 시 책임보험 가입, 학생자치단체 간부LT보험 가입, 새내기 캠프보험 가입 등을 통해 소속 구성원들의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10.3) 학생 사생활 보호

평가의견	- 대학은 개인정보 보호규칙 및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관리, 처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학금 신청 등 학생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동의서 및 개인정보 위탁계약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학생 사생활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10.4) 인권침해 예방 조치

평가의견	- 대학은 수업시간에 교수 등 교원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대학원생 강제노동 금지 및 인격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인격권 및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음 - 대학은 인권 소모임 및 인권집단상담을 운영하고, 인권존중 공모전 및 이벤트를 시행하였으며, 재학생 대상 익명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인권 침해 예방 노력을 기울여 왔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IV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대상사업 : 온라인평생교육원 사업]

가. 평가 종합

구 분	세 부 내 용
인권경영 이행 경과	- 온라인평생교육원은 대학 차원에서 구축된 인권경영 체제를 사업 수행과정에 적용함으로써 부정적 인권영향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이해관계자와의 사이에 부정적 인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의 인권체제를 마련하고 온/오프라인의 소통채널을 통해 인권침해 사항을 처리하는 등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갖추고 있음 -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사이에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 절차, 세부지침 및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위원들에 의한 이해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보안각서 징구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음
핵심이슈	전체 13개 지표 중 ‘예’ 12개(92.3%), ‘보완필요’ 1개(7.7%)로 나타났다
제언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온라인평생교육원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부속기관 차원이 아닌, 대학차원에서 인권교육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부속기관에서 의무적, 추가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에 명시된 인권교육 정의 준수

나. 주요사업 평가 결과

(평가요약)

-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이해관계자와의 사이에 부정적 인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의 인권체제를 마련하고 온/오프라인의 소통채널을 통해 인권침해 사항을 처리하는 등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갖추고 있음
-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사이에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 절차, 세부지침 및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위원들에 의한 이해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보안각서 징구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음

(개선과제)

-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온라인평생교육원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부속기관차원이 아닌, 대학차원에서 인권교육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부속기관에서 의무적, 추가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에 명시된 인권교육 정의 준수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사업의 인권체제	2	1			
2	공정운영	4				
3	참여자 정보보호 및 근로자 인권 보호	4				
4	사회적 책임 이행	2				
합 계		12	1			

다. 주요사업 항목별 평가 결과

1.1) 사업의 인권체제

평가의견	-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이해관계자와의 사이에 부정적 인권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칙 및 강령, 지침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인권경영 이행규칙, 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 교직원 행동강령 등) - 온라인평생교육원은 내부적으로 인권센터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인권상담’ 프로그램, 대외적으로는 STEP 사이트의 고객센터 채널, 수강자 대상으로는 나의 강의실 메뉴를 활용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인권침해 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음 -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사업담당 직원들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감성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방안을 학습하는 등 인권교육을 시행하였음
개선과제	-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부속기관 차원이 아니라 대학 차원에서 관련 기준이 마련되고 부속기관에서 의무적,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1.2) 공정운영

평가의견	-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이용자 및 참여업체 등에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업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콘텐츠 개발업체 선정, 내용 전문가 및 운영강사 등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운영하고 있음 (제안서 평가 위원회 세부기준 지침 마련, 자문/평가위원 운영기준 마련, 운영강사 위촉 및 활동관리 지침 마련 등) - 온라인평생교육원은 모든 평가업무 수행 시 평가위원을 홀수로 구성하여 심사하며, 심사위원에게는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부정청탁금지법 및 공무수행사인 안내 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있음 - 아울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들에게 메일, 전화,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응대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1.3) 참여자 정보 보호 및 근로자 인권 보호

평가의견	- 온라인평생교육원은 회원 및 수강생 회원 개인정보 접근 시 시스템 내 접근 사유를 작성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여 정보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온라인평생교육원은 대학 차원에서 실시하는 인권침해 등 조직문화 실태조사에 참여하여 직원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 - 온라인평생교육원은 근로자의 감정노동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음 -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협력업체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1.4) 사회적 책임 이행

평가의견	-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콘텐츠 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와 자막을 제공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노동자인 플랫폼노동자용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전 국민의 디지털 기초능력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초능력 과정 및 취준생 과정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원격훈련 인프라 분양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코로나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STEP 학습관리시스템을 분양하여 현재 529개 기관에 분양하였음
개선과제	- 개선의견 없음

가. 중대성 평가 개요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2022.08)’을 통해 인권영향평가 결과 식별된 여러 인권이슈를 대상으로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대처할 주요 인권이슈를 도출하도록 권고하였음
 - 인권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인권이슈들을 대상으로 대학 TF가 1차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해 용역팀에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중대성 평가를 수행함
- 중대성 평가는 해당 인권이슈의 발생 가능성(likelihood)과 영향 심각성(consequence)을 기준으로 실시
 - 발생 가능성 : 대학 및 타 공공기관에서 과거에 발생한 빈도, 현재나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 등을 수준 1부터 수준 5까지 평가하여 점수 부여
 - 영향 심각성 : 해당 인권이슈가 현실화되었을 때 기관의 사업성과 및 평판에 영향을 주는 정도, 재정손실 수준, 법 위반 여부에 의한 영향 수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준 1부터 수준 5까지 평가하여 점수 부여
- 중대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권이슈별 점수를 산출하고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분류하여 고위험군과 중위험군을 주요 인권이슈로 선정
 - 고위험군 : 발생 가능성 수준과 영향 심각성 수준을 곱한 점수가 10점 이상인 주요 인권이슈로 최우선적으로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중위험군 : 발생 가능성 수준과 영향 심각성 수준을 곱한 점수가 5점 이상인 주요 인권이슈로 고위험군에 이어 차순위로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보통위험군 : 발생 가능성 수준과 영향 심각성 수준을 곱한 점수가 5점 미만인 인권이슈로 상대적으로 후순위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함

나. 주요 인권이슈 도출

- 2022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총 6개의 인권이슈를 대상으로 TF가 1차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고 용역팀에서 이를 검토하여 주요 인권이슈를 도출함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6개의 인권이슈를 대상으로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여 3개의 주요 인권이슈를 선정하였음

분야	인권 이슈	중대성 평가				비고
		발생 가능성	영향 심각성	점수	분류	
인권경영 체제 구축	인권정책 선언 재검토 및 개선	2	5	10	고위험	주요 인권이슈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협력기관 선정시 인권보호 여부 평가 연계	2	2	4	보통위 험	
	계약시 계약상대방의 인권존중 서약 반영	2	5	10	고위험	주요 인권이슈
	협력기관의 인권보호 준수 여부 모니터링	1	4	4	보통위 험	
	협력기관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	2	5	10	고위험	주요 인권이슈
환경권 보장	환경정책 개발 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2	2	4	보통위 험	

VI 주요 인권이슈별 대응방안

가. 기관운영 개선과제

- 중대성 평가 결과 선정된 3개의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음

분야	주요 인권이슈	세부 내용	대응방안
인권경영 체제 구축	인권존중 정책 선언	- 2018년 12월 인권경영 헌장 제정 이후 4년 여가 경과하여 헌장 개정 필요성이 높아졌음 - 인권경영 헌장에 대학의 특성 및 최근 인권이슈를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내외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하여 대학의 기관 특성 및 최신 인권이슈(예: ESG경영과 인권 관련성)를 반영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개정하고 대내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인권정책 선언식을 개최하여 인권정책 확산 노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계약시 계약상대방의 인권존중 서약 반영	- 대학은 인권경영 헌장에 명시된 협력회사 인권경영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인권경영 이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계약 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을 징구하여 공급망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계약사무처리지침에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제출을 명시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을 징구하여 공급망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것을 제안함
	협력기관 인권침해 발생시 조치	- 대학은 인권경영 헌장에 명시된 협력회사 인권경영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인권경영 이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기관에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을 징구하고 필요 시 인권존중의무 이행 여부를 전화조사, 인터뷰,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협력기관으로부터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을 징구하고 필요 시 인권존중의무 이행 여부를 전화조사, 인터뷰,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제안함

나. 주요사업 개선과제

- 온라인평생교육원 사업에서 주요 인권이슈는 도출되지 않았음

VII. 인권경영 추진 로드맵

인권경영 비전	인권이 존중되고 사람이 먼저인 ‘행복 코리아텍’		
추진단계	인권경영 정착기 (~2022년)	인권경영 발전기 (2023년~2024년)	인권경영 선도기 (2025년~)
추진목표	인권경영 체계 구축 및 제도 안정화	인권경영의 지속적 발전 도모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기관
주요과제	•인권경영 규범 확립 •인권경영시스템 확립 •인권영향평가 확대 실시 •인권교육 체계화 •인권침해 구제절차 확립	•인권경영 규범 고도화 •인권경영 평가체계 수립 •인권실태조사 정례화 •인권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인권교육 내실화 •인권침해 구제절차 활성화 •인권경영 대외 협의체 운영	•인권경영시스템 선진화 •인권경영 평가체계 확립 •대내외 인권경영 생태계 조성 •인권 존중 문화 정착 •공공기관 인권경영 선도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이슈 파악	분석 및 진단	환류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 정례화	•인권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인권영향평가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인권침해 진정 이슈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규정 및 제도 고도화 •인권영향평가 권고사항 이행 노력 •전 직원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강화 •인권경영 대외 확산